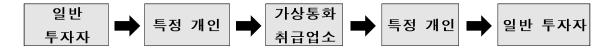
붙임 3 기상통화와 관련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

- ◇ 가상통화는 익명성·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큼
- ①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
 -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
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
 - o 마약 대금 등 **불법자금의 국내 반입**,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 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**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** 등이 의심됨



- ②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
 -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 후,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
 - o 가상통화에 대한 **지식이 부족한 일반인**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**사기, 유사수신행위** 등이 의심됨



- ③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
 - 해외 송금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 대금으로
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
 - o **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**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**사기, 다단계판매** 등이 의심됨